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2. 3(수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1. 18
- 나. 제안자 : 문희출·성용기 의원 외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10. 1. 18
- 라. 상정일자 : 2010. 2. 1(제18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성용기 의원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명문화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, 공공기관, 해당 공무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
-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인천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고용기회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참여비율 49퍼센트 이상을 추가함.
(안 제8조제2항제2호)
-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“자랑스러운 건설업자” 등에 대한 선정 기준을 신설함.(안 제8조의2)
- “자랑스러운 건설업자” 등의 예우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함.(안 제8조의3)
- 선정된 “자랑스러운 건설업자”가 위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배제조항을 신설함.(안 제8조의4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본 개정안은 지역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명문화하고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업자와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제2호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하도록 신설하였으며,

안 제8조의2에서 제8조의3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대상과,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, 안 제8조의4는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위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,
- 다만, 안 제8조의3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 유예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의 영세·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박승희 위원
 - 제주도 및 타시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보면 “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 유예”조항이 있는데 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 유예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

< 답 변 >

- 건설교통국장 홍 준 호
 - 동 조례가 개정되면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

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문희출, 강문기, 허식, 노경수, 박승희, 성용기, 이재호, 이은석 위원
- 나. 반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8명)

8. 기타 특이사항

-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2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

제8조의2 및 제8조의3,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)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및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업자
2.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업자
3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자 및 지역업자, 건설인,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

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의3(예우 및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·경영안정자금의 우선·우대지원 및 신용보증 우선적 보증
 2. 「지방세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 유예(단,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 한다)
 3. 선정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
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③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과 공공기관,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의4(적용배제)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.

1.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
3.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·폐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
4.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
5.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
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제8조의2(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) ① <u>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및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업자</u></p> <p>2. <u>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업자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자 및 지역업자, 건설인,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8조의3(예우 및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·경영안정자금의 우선·우대지원 및 신용보증 우선적 보증 2. 「지방세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 유예(단,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.) 3. 선정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 <p>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③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과 공공기관,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8조의4(적용배제)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.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·폐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.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.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